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근로기준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62호, 4. 6 시행)됨에 따라,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(별지 제4호의2서식)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)
- 나. 사용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, 기존에 건강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「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」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[별지 제5호서식]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)

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 전단 중 “영 제60조제4항”을 “영 제60조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8조의2(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)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제8조의2(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)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7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		제17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60조		제17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6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